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,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
- 나.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
- 다.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하여 공항경제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수립 및 실행 전담기구(한시기구)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책정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 - 1) 1,824명 → 1,890명(+66명)
    - 집행기관 : 1,786명 → 1,843명(+57명)
    - 의회사무기구 : 38명 → 47명(+9명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제4조의 별표 3)
  - 1) 정원 총계 : 1,824명 → 1,890명(+66명)
  - 2) 일반직 계 : 1,783명 → 1,848명(+65명)
    - 4급 : 11명 → 12명(+1명)
    - 5급 : 90명 → 97명(+7명)
    - 6급 이하 : 1,674명 → 1,731명(+57명)

3) 지도직 계 : 33명 → 34명(+1명)

- 지도사 : 30명 → 31명(+1명)

다. 한시 정원표 신설(안 제6조의 별표 4)

1) 정원 : 1명

2) 직급 : 4급

3) 존속기한 : 2025. 12. 31.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 
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824명이며”를 “1,890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786명”을 “1,84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38명”을 “47명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6조(한시정원)** 구미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**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| 기관별<br>직급별   | 총계           | 본청           | 의회<br>사무국 | 출장소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면동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<b>총 계</b>   | <b>1,890</b> | <b>1,890</b>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<b>정무직 계</b> | <b>1</b>     | <b>1</b>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시장           | 1            | 1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<b>일반직 계</b> | <b>1,848</b> | <b>1,848</b>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3급           | 1            | 1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4급           | 12           | 7            | 1         | 1   | 1    | 2   |     |
| 5급           | 97           | 46           | 3         | 5   | 5    | 13  | 25  |
| 6급이하 소계      | 1,731        | 1,731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전문경력관 소계     | 7            | 7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<b>별정직 계</b> | <b>1</b>     | <b>1</b>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5급 상당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6급 상당 이하 소계  | 1            | 1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<b>연구직 계</b> | <b>6</b>     | <b>6</b>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연구관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연구사          | 6            | 6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<b>지도직 계</b> | <b>34</b>    | <b>34</b>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| 지도관          | 3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3    |     |     |
| 지도사          | 31           | 31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|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4]

한시 정원표(제6조 관련)

| 기 관 별   | 정 원 |            | 존속기한        | 비 고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| 계   | 내 역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
| 미래도시기획실 | 1   | 일반직 : 4급 1 | 2025.12.31. | 미래도시기획실장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| 개   정   안  |
|--|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824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786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38명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br/>----- <u>1,890명</u>이며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 <u>1,843명</u></p> <p>2. ----- <u>47명</u></p> <p><u>제6조(한시정원) 구미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</u></p>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-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생략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**제29조(직급별 정원)**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- ③ ~ ⑤ 생략

#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 요인

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,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총 66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단가와 '2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.4%를 적용하여 추계한다.

나.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한다.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66명을 증원할 경우 '23년 3,897,512천원을 포함하여 '27년까지 20,040,90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.

#### 【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】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2023      | 2024      | 2025      | 2026      | 2027      | 합 계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비 용     | 3,897,512 | 3,952,078 | 4,007,407 | 4,063,510 | 4,120,400 | 20,040,907 |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2023      | 2024      | 2025      | 2026      | 2027      | 합 계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국 비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 |
| 시 비     | 3,897,512 | 3,952,078 | 4,007,407 | 4,063,510 | 4,120,400 | 20,040,907 |
| 합 계     | 3,897,512 | 3,952,078 | 4,007,407 | 4,063,510 | 4,120,400 | 20,040,907 |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

행정안전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양상병(054-480-6773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추계 대상

공무원 정원 증원 66명

2. 비용추계 방법

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66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공무원 1인당 직급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, '23년부터 '27년까지 '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.4%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| 총 무 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박 노 돈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김 혜 진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양 상 병<br>(480-6773) |